

문서번호	교통시설운영처-719
보존기간	준영구
결재일자	2024.01.15.
공개여부	비공개(5)

★팀장	교통시설운영처장	교통사업본부장		
협 조	주차시설운영처장		장애인콜택시운영 처장	
	교통정보처장		공공자전거운영처 장	
	인사노무처장		기획조정실장	

혼잡통행료 징수 정책 변동 관련 인력운영 방안

2024.

혼잡통행료 징수 정책 변동 관련 인력운영 방안

□ 市정책변경 방향

- 남산1·3호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정책 변동
 - “단방향 징수” (도심진입 방향만 징수) : 2024.1.15.부터 시행 예정
- 정책변경에 따른 인력운영 조정
 - 단방향 징수에 따른 잉여인력 감축
 - 단방향 소요인력 제외한 수납원(잉여) 2024년 3월까지만 운영

□ 요금소 인력운영 현황(기준일 : 2023.12.31.)

- 근무형태(70명) *징수시간: 평일 07~21시(토·일·공휴일 무료)

구분	인원	평일		주요 업무
		A조	B조	
소장	1	[일근]		• 남산1·3호요금소 총괄 • 과태료 고지 및 미납차량 관독
과태료	5	09:00~18:00		
운영	4	06:30~15:30	13:00~22:00	• 1일 2교대(A/B조) - 운영담당: 수입금 정산·납입 및 수납원 복무관리 - 시설담당: 징수시스템 및 시설물 유지관리 - 수납원: 2(3)시간씩 부스근무 2~3회 실시 - 보안: 시설경비 및 징수 업무 지원, 환경정리
시설	4			
수납원	52			
보안	4			
		06:00~15:00		

*본사 전산 및 행정 인력 2명 별도

○ 담당업무별

구분	사무(10)	시설(4)	수납원(52)	보안(4)
담당업무	소장(1),과태료(5) 운영·수입금(4)	시설관리 (전기2,통신2)	통행료 징수 (정규직47,기간직5)	경비 및 환경정비 (보안4)
비고	운영담당 1·3호 각 2명	1·3호 각 2명	1·3호 각 26명	1·3호 각 2명

서울시 정책변동에 따른 인력운영 검토

운영 변경

단방향 징수 시 남산1·3호 각 8개 부스 중 4개 부스만 운영
(통행량 data 관리를 위해 미징수 시설 존치)

인력조정(안)

감원대상

향후계획

- 市 방침 시달 후 노조 협의를 통한 인사기준 마련·시행('24.3월내 재배치)

【참고2】 해고관련 노동관계 법률 및 규정

「근로기준법」 제24조(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)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.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·인수·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.

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,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(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. 이하 “근로자대표”라 한다)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.

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.

「공단 단체협약」 제56조(감원 및 고용안정) ① 공단은 조직개폐와 조합원의 감원이 있을 때에는 사전에 조합과 협의하고, 일방적으로 감원조치를 하지 아니한다.

② 공단은 조합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한다.